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3.

발 의 자 : 김은혜 · 박준태 · 강승규
서천호 · 김소희 · 김기현
김성원 · 최수진 · 김선교
고동진 · 조배숙 · 광규택
신동욱 · 김종양 · 엄태영
김상훈 · 김재섭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「공직선거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’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.

이에,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1항 제2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5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, “사람”을 “사람 중 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일 기준 4년 동안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.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 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<u>3년</u>이 경 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 라 있는 <u>사람</u> <단서 신설> ② ~ ⑭ (생략)	2. ----- ----- -----<u>5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람</u> 중 이 법 제21 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일 기준 4년 동안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. 다 만,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 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의 국민에 한정한다. ② ~ ⑭ (현행과 같음)
--	---